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 內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사업기간 : 2024. 8. 1.(협약 체결 후) ~ 2024. 12. 31. (약 5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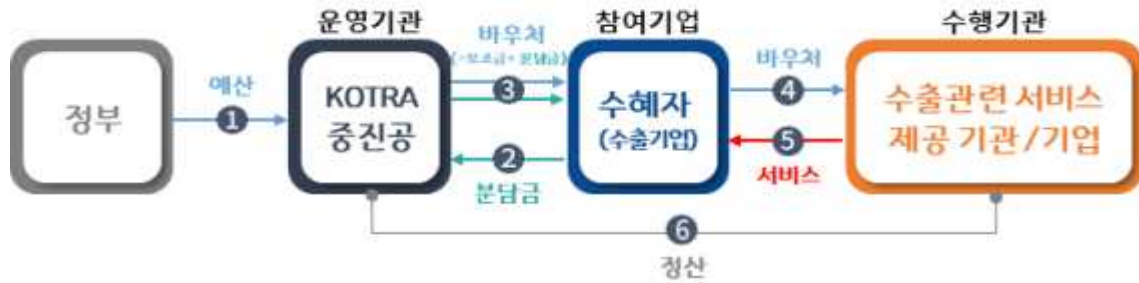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선정된 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 - KOTRA본사(수출전문위원) - KOTRA 해외무역관 협업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전시회/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 물류운송, 홍보·광고, 컨설팅(시장조사/일반, 법무/세무/회계), 디자인 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 (“7. 바우처 서비스 메뉴” 참고)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협업체계 >

KOTRA 본사(수출전문위원)	참가기업	KOTRA 해외무역관
상시 멘토링 사업수행 1:1 지원 성과 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및 로드맵 수행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 ◆ 사업개시일(2024. 8.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 '24년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개시일(2024. 8. 1.)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1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고)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단계별 신청자격 및 바우처 발급액

○ (1)내수중건, (2)중건글로벌, (3) Post 중건글로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내수중건	중건글로벌	Post중건글로벌
사업목적	<u>내수중건기업의 해외진출</u> 지원	유망 중건기업의 <u>글로벌화</u> 지원	
신청자격	중건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중건기업	'중건글로벌' 5회 참가 중건기업
지원규모	OO개사		
지원내용	·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수출지원서비스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9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5천만원	1억원	1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3,500만원	50% / 최대 5,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1,500만원	50% / 최대 5,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내수중건 유형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중건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통해 금융·물류컨설팅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 (예시) 수출보험 등 우대(무보), 물류비할인(FEDEX, DHL), 수출컨설팅(관세청) 등

○ 신청자격별 용어 정의

* 중건기업 : 중건기업확인서 보유기업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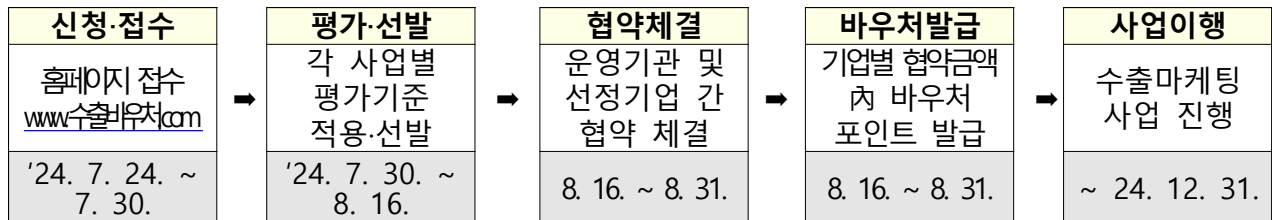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4. 7. 24.(수) ~ '24. 7. 30.(화) 24시까지

□ 진행절차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23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23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7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8	수출실적증명원('21~'23년)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선택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확인)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4. 평가 기준

□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구분	내용
심사기준	· (계량) 최근 3년간('21~'23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외부위원 입회)

□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동점 시 선정기준 : 1) 우대조건(가점) 사항이 많은 기업, 2) 본 사업 기존 참여기업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중기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불가
- KOTRA 서비스 BM(Business Model)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불가
- KOTRA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동시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최종선정**
* 예시)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것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he기관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 시
-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24년 8월 이내 1회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수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또는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근거,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 시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 초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정평가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내 부가세 미납부 시 2년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업	KOTRA 중견기업팀	02-3460-7238, 7233, 7246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 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시스템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7.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4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 (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초청 고객행사(설명회/세미나 등),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Halal 인증 등 해외인증취득에 성공한 “적합” 판정받은 결과물(시험·심사·인증)에 대해, 인증별 인정한다도 기준에 따른 비용 지원 * 단 사이트-커뮤니티-정산가이드-해외규격인증분야 정산가이드의 붙임 ‘공공규격 리스트’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지재산권	특허·지재산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산권 등록, 특허·지재산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 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이 가능함

[별첨 1]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연번	구분	주관기관
1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	WC300, WC Plus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4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5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6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7	ATC(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ATC 협회
8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9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선정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10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지방자치단체
11	수소 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12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13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14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15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16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참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